

수익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(제26조 관련)

1. 공급기준

가. 시행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, 해당 토지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(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되,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)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.

나. 시행자는 「주택법」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.

다.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동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.

2. 공급면적

가.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마다(다만,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)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,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.

나.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

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.

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-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×(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/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)

다.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.